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9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0. 8. 16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2009년 2월 창녕 화왕산 역새태우기 지역축제 행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「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」의 일환으로 지자체 조례에 지역축제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명확한 심의 근거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·공연·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가.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산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·공연·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2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(지역위원회의 기능)
- 공연법 시행령 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(현행)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관한 사항
5. 안산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·공연·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 (기능)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검토·협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p> | <p>제2조 (기능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5. 안산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·공연·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6.</p> <p>.....</p> |